

제 790 호  
1980. 7. 14.

책임인: 서울특별시광 전 상 천  
편집: 문화공보관 심 계 성  
전화 75-7834  
인쇄: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 시보

## 차례

### ◎ 조례

제 1444 호 : 서울특별시립도서관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3
제 1445 호 : 서울특별시국민학교교사자격부여 보수교육강습 수강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	3

### ◎ 훈령

제 529 호 : 서울특별시 청원경찰징계규정	4
제 530 호 : 서울특별시국민(민영) 주택사업계획심의회 운영규칙 중 개 정규정	9

### ◎ 고시

제 253 호 : 도시계획지침변경(폐지)	10
제 257 호 : 도시계획사업(도로및 하수도) 실시계획인가	11

<이면 계속>

1. 시 \*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제 258 호 :	도영구역제 3 지구재개발사업시행인가및 재개발조합설립 인가 ..... 11
제 259 호 :	마포로주변구역제 1 지구제 17 회지재개발사업시행인가.....12
제 260 호 :	도시계획사업 ( 양묘포지조성 ) 실시계획인가 ..... 13
제 260 호 :	도시계획사업 ( 예책자동차정류장 ) 시행허가 ..... 18
제 261 호 :	도시계획사업 (
◎ 공 고	
제 230 호 :	특정연료사용기기시공업자선취소공고 ..... 18
제 230 호 :	

제 790 호 시

보 1980.7.14

18-3

조례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0.7.11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이 창간(回)

## ◎ 서울특별시조례 제 1444 호

서울특별시립도서관설치조례증개정조례  
서울특별시립도서관설치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80.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lt;별표&gt;

명 칭	위 치
종로 도서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산1번지 9호
남산 도서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0번지 84호
동대문 도서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109번지 43
영등포 도서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8가 121-25
청북 도서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화동 1번지
어린이 도서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1번지 27호
마포 도서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602번지 1호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국민학교 교사자격부여 보수 교육강습 수강료 정수조례증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0.7.15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이 창간(回)

보수교육 강습 수강료 정수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수강료는 4주를 1기로 하여 1인당 20,000원을 징수한다.

부 칙(8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훈령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징계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80.7.14

서울특별시장 정상천

◎ 서울특별시 훈령 제 529 호

서울특별시 청원경찰정책 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 17 조와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및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청원경찰의 정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청원경찰 정체위원회의 설치) 청원경찰의 정체에 관한 사항을 심의 회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정체위원회(이하 '정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 3 조 (구성) ① 정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5인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내무국장,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인사과장비 상계회보과장, 도시가스과장, 도로관리과장, 업무과장이 된다.

③ 정체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

사는 총무과 서무제장이 된다.

제 4 조 (정체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정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통리하며 표결권을 가진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 3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순으로 위원장이 된다.

제 5 조 (정체의결의 요구) ① 정체요구자는 청원경찰의 소속기관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이 된다.

② 소속기관장은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 17 조 규정의 정체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 1호서식의 정체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정체위원회에 정체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정체의결요구서의 정체요구권자와 의견란에는 정체요구 양정 및 심의상 참고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 6 조 (정체의결기한) 정체의결은 정체의결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정체요구사항을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p><b>제 7 조 (정계심의 대상자의 출석)</b></p> <p>① 정계위원회에서는 정계안전을 심의할 일자를 정하고 정계심의 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정계심의 대상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계위원회는 의결로서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② 정계심의 대상자가 정계위원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포기서를 제출케하여 이를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에 의하여 정계 의결할 수 있다.</p>	<p><b>제 9 조 (정계사유심의)</b> 정계위원회에서 정계안전을 심의할 때에는 일증자로의 적부, 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 및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개전의정 유무등의 정상참작과 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계승정의 적장을 기하여야 한다.</p>
<p>③ 정계심의 대상자가 2회이상 출석통지를 하여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하고 (출석통지서 부분 첨부) 서면심사에 의하여 정계의결할 수 있다.</p>	<p><b>제 10 조 (정계위원회의 의견)</b> ① 정계위원회의 간사는 정계심의에 앞서 각 위원에게 정계사유 및 동기, 정계요구권자의 의견등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p>
<p><b>제 8 조 (심문과 진술권)</b> ① 정계위원회는 출석한 정계심의 대상자에게 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심문을 할 수 있고 정계심의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판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p>	<p>② 정계위원회의 의견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정계심의 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순차 유리한 의견을 가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다만, 찬반이 같을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p>
<p>② 정계위원회는 정계심의 대상자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정계심의 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p>	<p>③ 정계심의 결과에 따른 각 위원의 정계양정 결정방법은 심문과 진술이 끝나고 정계심의 대상자를 퇴장시킨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정계외</p>

18-6 제 790 호 시

보 1980.7.14

설 투표지에 자기의견을 해당 날에 표시하여야 하며 기표내용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 3 항의 절차에 의거 정계의견이 결정되면 별지 제 4 호 서식의 정계의결 대장에 등재하는 동시에 별지 제 5 호 서식의 정계의견서를 작성하고 제 3 항의 정계투표지(위원장과 간사가 간인)를 첨부한 정계의견서 원본과 사본(간사가 작성하였음을 기재) 1통을 정계요구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1 조(집행) ① 정계위원회로 부터 정계의결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소속기관장은 10일 이내에 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정계처분을 행함에 있어서는 별지 제 6 호 서식의 정계처분 사유설명서에 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정계의결된 자에게 교부하므로써 이를 행한다.

제 12 조(재심청구) ① 정계처분을 받

은자가 정계처분이 부당하거나 불리한 처분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 및 자기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장을 경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장은 재심청구를 접수하면 즉시 정계위원회에 회부 재심의뢰 하여야 한다. 이때 재심의 위원은 따로 임명한다.

③ 재심의 절차 및 의결방법은 일정에 같다.

제 13 조(서류등의 비치) 정계요구권자는 청원경찰의 정계에 관한 모든 서류를 보관 비치하여야 한다.

제 14 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시항은 지방공무원정계 및 소청규정 및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 1 호 서식>

#### 청원경찰정계의 결요구서

정 계 처 분 의 내 용 내 용 내 용	성명	직명		소속 및 배치장소
		생년월일	재직기간	
대상자	본적			
주소				
정 계 처 분 의 내 용 내 용 내 용	별첨과 같음.			
공적				
정계요구권자 의 의견				
위와같이 정계의결을 요구함.				
년 월 일				
소속기관장				

제 790 호 시

1980.7.14 18-7

(별지 2호서식)

출 식 통 지 서

인 적 자	성 명	소 속
		직 명
할 주 소		
출식 이유		
출식 일시		
출식 장소		
기 타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식  
할 것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청원경찰징계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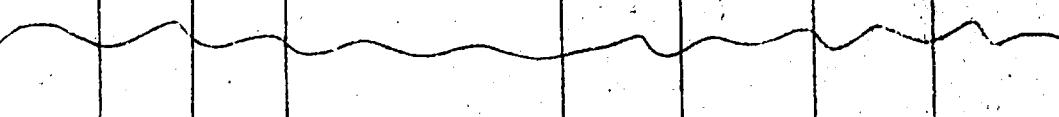
인

· 귀 하

(별지 3호서식)

징 계 의 결 투 표 지

파 닫	·감 봉						전 책	기 각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8-8 제790호 시			보 1980.7.11				
(별지 4호서식)			정 계 외 결 대 장				
정 계 외 결 대 상자		정 계 사 유	정 계 외 결 요 구		정 계 외 결		
소 속	제 급	성 명	(비) 위 내 용	일 자	요구 양정	일 자	외결 양정
							
(별지 5호서식)			정 계 외 결 서				
정 계 대 상자		소속 및 배치 장소		직 명		성 명	
인적 사항							
외결 주 문		에 처한다.					
적용 법 조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7조 1항 호					
정 계 사 유		별지와 같음.					
위와 같이 정계외결함.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청원경찰정계위원회							
위 원 장				인 원			
부위 원 장				인 원			
위 원				인 원			
				인 원			
				인 원			
				인 원			

제 79.0호

시

1980.7.14

18-3

(별지 6호서식)

정 계 시 분 사 운 설 명 서

소속 및 배치장소	직명	성명
주 문	에 처한다.	
사 유	별첨 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소속 기관장인

귀하

서울특별시 국민(민영)주택사업계획  
심의회운영 규정중 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80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장 정상천

### ○ 서울특별시 훈령 제 530 호

서울특별시국민(민영)주택사업  
계획심의회운영규정중개정규정  
서울특별시 국민(민영)주택사업계획  
심의회운영 규정중 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민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주택  
건설입지의 적합여부를 시장이 결정  
함에 있어 소관사항을 사전 심의  
하기 위하여 국민(민영)주택사업  
계획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8-10 제790호 시

보 1980.7.14

제 2 조 (구성) ② 위원장은 제 2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주택국장, 비상재난관, 환경국장, 산업국장, 도시계획국장, 건축국장, 공원녹지국장, 하수국장 및 수도국장이 되고 필요시 위원장이 국장 중에서 추가 위촉할 수 있다.

제 3 조 중 현행을 제 1 항으로 하고  
제 1 항 중 제 9 호를 제 10 호로 하고  
제 9 호를 신설하며, 제 2 항, 제 3 항  
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준공업자역동의 기존공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공해의 지장 유  
무 판단.

② 주택국장은 심의결과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사항을 소관 국장으로부터 문서  
로 수합하여야 한다.

③ 제 1 항의 심의사항은 시장이 최  
종결정하므로써 확정된다.

제 6 조를 제 9 조로하고, 제 8 조를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8 조 (비밀준수) 심의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기타 실의 업무  
에 관여한 관계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고 시

#### ◎ 서울특별시 고시 제 253 호

##### 도시계획시설변경 (폐지)

- 전설부고시 제 131 호(76.8.21) 및  
서울시 고시 제 256 호(76.10.2)의  
판면임.
- 영동아파트지구(3-2지구)내 강  
남구 반포동 312부역내의 도시계  
획시설(아동공원)은 다음과 같이  
이를 폐지한다.

1980.7.7

서울특별시장

##### 도시계획시설변경조서

구 분	시 설 명	위 치	면적	비 고
기 존 청 면 경	아동공원	영동 3-2주구 (312부역)	2,728	폐지
		"	-	

제 790 호

시

보

1980.7.14

18-1

## ◎ 서울특별시 고시 제 257 호

도시계획사업(도로 및 하수도)

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154 호(74. 10.23) 및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2 호(80.6.18)로 지적승인 및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공람공고한 관악구 신림동 미림여중고교-신우국교간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도로 및 하수도)를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5조 및 동법시행령 제 27조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2 호(80.6.18)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본 실시계획 인가에 관한 관계 도서는 관악구청 토목과 및 시민봉사실에 배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한다.

1980.7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305번지에서 신림동 320번지의 37간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미림여중고교-

신우국교간 도로건설공사

다. 사업의 규모:

도로개설 및 포장 - B=20m, L=4.0m

토 풍 - V = 7,094 m<sup>3</sup>

옹벽공 (H=4-5m) L=74m

포장 - A = 33.75 a

하수도 (D=600%) L=265m

라.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장(관악구청장)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 일:

인가일 - 1981.12.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

별첨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 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 성명:  
별첨

아.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별첨(생략)

## ◎ 서울특별시 고시 제 258 호

도영구역제 3지구 재개발사업시행인가 및 개발조합설립인가

1. 전설부 고시 제 367 호(73.9.6)로 구역 지정의고 동고시 제 340 호(79.9.20)로 재개발사업 계획을 정된 도영재개발구역 제 3 지구에

1980.7.12 제 790호 시

보 1980.7.14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 17 조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 사업 시행 및 재개발  
조합 설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에 도시재개발법 제 16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  
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축국  
재개발 1과 및 도영구 지구  
재개발조합에 비치하고 이 관계인  
의 공람에 공한다. (관계도서생략)

1980.7.14  
서울특별시장

다 음

사. 재개발 사업의 명칭 : 도영구 역제 3 지  
구 재개발사업

다. 시행구역 및 면적

- 시행구역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1가 58-7 번지의 23 과지
- 시행면적 : 2,146.4 m<sup>2</sup>
- 대지면적 : 1,788.2 m<sup>2</sup>
- 공동용지부남면적 : 658.2 m<sup>2</sup>
- 건축계획 (규모 및 용도는 건축  
허가서로 확정함)  
· 건축면적 : 784.9 m<sup>2</sup> (전체율  
43.89%)

연면적 : 12,877.99 m<sup>2</sup> (용적율  
521.07%)

주용도 : 업무시설 및 공동주택

총 수 : 지상 10 층, 지하 4 층,

옥탑 2층

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종로구  
신문로 1가 24 번지 고려빌딩 916호  
라. 시행기간 : 시행인가일 - 1982.7.31  
나. 시행인가년월일 : 1980.7.14  
바.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1가 58-7번지 도영구역제 3 지구  
재개발조합 조합장 전체옥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명세 및 소  
유권이 의의 권리명세 (별첨생략)

### ⑤ 서울특별시 고시 제 259호

마포로주변구역제 1 지구제 17 획지  
재개발사업시행인가

1. 전설부고시제 345호(79.9.21) 및  
동부고시제 146호(80.5.19)로 재개  
발구역지정 및 사업계획 결정된 마  
포로주변구역 제 1 지구제 17 획지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 12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시행인가하였기 동법 제  
16 조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축국  
재개발 1과 및 마포로주변구역제 1 지구  
제 17 획지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의  
사무소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의  
공람에 공한다. (관계도서생략)

1980.7.14  
서울특별시장

제 790 호 시

보 1981.7.14 18-13

<p>다. 음</p> <p>가. 재개발사업의 명칭 마포로주변구역 제1지구 제17차지 재개발사업</p> <p>나. 시행구역 및 면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행구역 :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16-9, 292-8 번지 일대</li> <li>○ 시행면적 : 1,448.3㎡</li> <li>○ 대지면적 : 1,298.8㎡</li> <li>○ 전축계획 전축면적 : 609,675㎡ (전체율 46.94%) 연면적 : 6,569.46㎡ (용적율 377.43%) 층 수 : 지하 2 층, 지상 10 층 용도 : 사무실</li> <li>다. 주민사구 조기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삼각동 115번지 신 원통상주식회사</li> <li>라. 시행기간 : 시행인가일 ~ 1981.12.31</li> <li>마. 시행인가년월일 : 1980.7.14</li> <li>바.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서울특별시 중구 삼각동 115번지 신원 통상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성철)</li> </ul> <p>◎ 서울특별시 고시 제 260 호</p> <p>도시계획사업 (양묘포지조성) 실시계획인가</p> <p>1. 건설부고시제 146 (75.9.3) 호로</p>	<p>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 (양묘포지조성)에 대하여 도시계 획법 제 25 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6 조 동법시행령 제 27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1 호 (77.3.16) 를 의하여 이를 고시함.</p> <p>2. 토지소유자 및 이 대관제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는 이 고시로 갈음함.</p> <p>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공원녹지 국 녹지과 및 성동구청 건설관리 과에 배치함.</p> <p style="text-align: right;">80.7.14</p> <p style="text-align: right;">서 울 특 별 시 장</p> <p>1. 사업시행위치 : 성동구 군자동 205 의 198 외 100 일지</p> <p>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류 - 녹지시설 명칭 - 양묘포지조성</p> <p>3. 사업규모 : 17,516 평</p> <p>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p> <p>5. 착공 및 준공년월일 80.7~81.7.31</p> <p>6. 사용 또는 수용할 재산의 소재지 : 별첨</p> <p>7.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와 토지수용 법 제 4 조 3 항의 관계인 주소, 성명 : 별첨 토지조사</p>
---	--

18-14 계790호 시

보 1980.7.14

인 가 중	
1. 사업시행위치: 서울특별시 성동구 군자동 204와 48일대	80.7.31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류- 농지사업 명칭- 양묘포지조성	6. 사용또는 수용할 재산의 소재지: 별첨 위와같이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 업 실시계획을 인가함.
3. 사업규모: 17,516평	80.7.14
4.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장	
5. 착공 및 준공예정일: 80.7 -	서울특별시장

## 토 지 조 서

순위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책	소 유 자		
					주	소	설명
1	성동구군자동	205-1094	답	144	중구태평로1가31	서울시장	
2	"	-1097	"	253	"	"	
3	"	-1098	"	7	"	"	
4	"	-1099	"	389	"	"	
5	"	-1100	구·거	17	마장동 473-11	농지개량조합	
6	"	-1152	"	33		동양척식	
7	"	-1101	도로	34		"	
8	"	-1102	답	28	마장동 473-11	농지개량조합	
9	"	-1103	"	348	태평로1가31	서울시장	
10	"	-1104	"	510		"	
11	"	-1105	"	606		"	
12	"	- 75	龜	553		"	
13	"	-1106	"	4		"	
14	"	-1107	"	29		"	
15	"	-1108	"	17		"	
16	"	1109	"	12		"	
17	"	1110	"	8		"	
18	"	1153	구·거	60		동양척식	

제790호 시

보 1980.7.14 18-15

순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주소	성명
19	성동구군자동	205-1111	답	208	중구태평로 1가 31	서울시장
20	"	-1112	"	211	"	"
21	"	-1113	"	89	"	"
22	"	-1114	"	128	"	"
23	"	-239	"	63	"	"
24	"	-1116	전	191	"	"
25	"	-1115	답	58	"	"
26	"	-1117	"	155	상봉동 142-42	복원운
27	"	-800	전	374	동대문상봉동 142-42	"
28	"	-1118	답	449.8	중구태평로 1가 31	서울시장
29	"	-226	전	157	"	"
30	"	-65	답	69	"	"
31	"	-1154	구거	22		동양직식
32	"	-1119	답	29	중구태평로 1가 31	서울시장
33	"	-1120	"	10	"	"
34	"	-1155	구거	31		동양직식
35	"	-1121	답	221	중구태평로 1가 31	서울시장
36	"	-1122	"	305	"	"
37	"	-1123	"	407	동대문상봉동 142-42	복원운
38	"	-1124	"	526	중구태평로 1가 31	서울시장
39	"	-1125	"	564	"	"
40	"	-1126	"	10	"	"
41	"	-1127	"	144	"	"
42	"	-1128	"	132	"	"
43	"	-1129	"	40	"	"
44	"	-1130	전	69	"	"
45	"	-1131	답	24	"	"
46	"	-14	"	968	"	"
47	"	-352	"	937	"	"

18-16 제790호 시

보 1980.7.14

순위	소재지	자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주 소	소	성 명
48	설동구군자동	205-353	전	334	충구대평로 1 가 31	서울시 장	
49	"	-354	답	441	"	"	
50	"	-355	전	272	"	"	
51	"	-1156	구거	478		동양제식	
52	"	-1133	답	105	충구대평로 1 가 31	서울시 장	
53	"	-1158	"	111	"	"	
54	"	-1134	"	103	"	"	
55	"	-1135	"	121	"	"	
56	"	-1136	"	9	마장동 473-11	농지개량조합	
57	"	-1137	"	9	"	"	
58	"	-1138	"	14	충구대평로 1 가 31	서울시 장	
59	"	-1139	"	82	"	"	
60	"	-1140	"	39	"	"	
61	"	-351	전	248	"	"	
62	"	-29	답	637	"	"	
63	"	-652	"	16	"	"	
64	"	-380	"	32	"	"	
65	"	-349	"	901	"	"	
66	"	-656	"	14	"	"	
67	"	-348	"	896	"	"	
68	"	-657	"	15	"	"	
69	"	-346	"	478	"	"	
70	"	-347	"	315	"	"	
71	"	-790	"	5	마장동 473-11	농지개량조합	
72	"	-484	"	20	충구대평로 1 가 31	서울시 장	
73	"	-1086	"	18	"	"	
74	"	-789	"	37	마장동 473-11	농지개량조합	
75	"	-345	"	41	"	"	
76	"	-344	"	52	"	"	

제790호 시

보 1980.7.14 18-17

순위	소재지	자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주 소	성 명
77	성동구군자동	205-343	답	100	중구태평로1가31	서울시장
78	"	-7~1	"	13	마장동 473-11	농지개량조합
79	"	-1088	"	6	"	"
80	"	-483	"	19	"	"
81	"	-1090	"	23	"	"
82	"	-482	구거	36		동양척식
83	"	-1092	답	28	"	"
84	"	-481	"	171	중구태평로1가31	서울시장
85	"	-1094	"	17	"	"
86	"	-153	"	42	"	"
87	"	-479	"	245.8	"	"
88	"	-64	"	183	"	"
89	"	-155	"	118	"	"
90	"	-1141	전	18	"	"
91	"	-63	답	93		국유지
92	"	-157	"	51		"
93	"	-1142	"	10	중구태평로1가31	서울시장
94	"	-165	"	89	"	"
95	"	-62	"	511	"	"
96	"	-159	"	30	"	"
97	"	-25	"	58	"	"
98	"	-161	"	70	"	"
99	"	-163	"	32	"	"
100	"	-44	"	31.4	"	"
101	"	-164	"	4	"	"

16-18 제790호 시

◎ 서울특별시 고시 제 261 호

도시계획사업 (여객자동차정류장) 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230 호 (80.6.23.)로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시설 (여객자동차정류장)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63 호 (79.12.10.)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 (여객자동차정류장) 시행허가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성북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0.7.15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사업시행자 : 성북구 정릉동

893-1의 1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

사업 (여객자동차정류장)

도원교통주식회사버스 주차장공사

다. 면적 및 규모 : 1,940㎡

보 - 1980.7.14.

라. 시행자주소, 성명 : 성북구정릉동

924-4

도원교통주식회사 대표 김봉수

사업의 확수 및 준공예정일

1) 확수면적일 : 80.7

2) 준공예정일 : 80.12.30

바. 위치 및 계획평면도 : 별첨 (도

면생략)

사. 공사설계도면 : 별첨 (도면생략)

\* 도면은 성북구청 도시정비과에  
보관함.

공 고

◎ 서울특별시 공고제 230 호

특정면로 사용기기 시공업

기 정 허 소 공 고

열관리법 제 2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특정면로 사용기기 시공업자 정을  
취소하였기 열관리법 시행규칙 제 31  
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80.7.10

서 울 특 별 시 장

하

용

지정번호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지정종목	취소사유
중구제 57 호	신한종합설비(주)	에판동 70-27	홍희선	4종목	열관리법 제 26조제 1항 위반